

부동산 분양계약 관련 인지세 납부 안내

■ 인지세 안내

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미납부 또는 전자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**최고 300%의 가산세**를 납부하셔야 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(**1억원 이상~10억원 이하 : 15만원**)를 납입하신 후 정부수입인지를 아파트 등기 시 반드시 등기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하셔야 합니다.

■ 인지세 납부기한 및 방법 ※(관련법령)인지세법 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

- 과세대상 :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
- 납부기한 방법 : [분양계약] 계약체결일 / [전매] 명의변경 승인일
계약서를 작성할 때 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

■ 전자수입인지 구입처

- 수입인지 사이트 (e-revenuestamp.or.kr)
- 우체국·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

■ 가산세 개정사항('21.1.1.부터 적용) ※(관련법령)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9항

-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100%
-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200%
- 6개월 초과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300%

■ 인지세(전자수입인지) 구매방법 안내

① 해당 홈페이지 접속 - 전자수입인지(www.e-revenuestamp.or.kr) 또는 네이버 검색창 “전자수입인지” 검색

②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



④ 구매 - 납부정보입력

- ① 용도 : 인지세 납부
- ② 과세문서 종류 :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
- ③ 금액 : 150,000원
- ④ 건수 : 1건
- ⑤ 확인 및 결제

③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



⑤ 출력

※ 전자수입인지는 **1회에 한하여 출력**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**(재발행 불가)**